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-87호

### 2025년도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

2025년도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	임용	임용	계약	담 당 업 무	근무(	예정
분야	직급	인원	기간		부	서
피지컬 Al	지방행정 6급 (일반임기제)	1명	2년	<ul> <li>■ 피지컬AI 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</li> <li>■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 추진 등</li> <li>■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추진, 핵심기술 공모 대응</li> <li>■ KISTEP 적정성 평가 대응 논리 마련</li> <li>■ 피지컬AI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</li> <li>■ 피지컬AI 업무보고, 현안업무, 국회·의회 대응 등</li> </ul>	전 산입	환 [감과

※ 임용(계약)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## 2 임용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5, 제27조제2항
- 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조의2, 제3조의5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)
- 라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(대통령령 제33507호)
- 마. 「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## 3 임용자격 기준

### 가.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일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 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외"이라 한다)
-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### 나. 자격요건(기준일: 면접시험일)

▶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<b>임용분야</b> (직급)	임용자격 기준
<b>피지컬AI</b> [지방행정6급] (일반임기제)	<ul> <li>화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※ 관련학과         <ul> <li>인공지능학과, 데이터사이언스학과, Al융합학과, 스마트모빌리티, 로봇학과, IT융합학과, 전자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컴퓨터과학과, 소프트웨어공학과, 통계학과 등 관련 학위 (자격요건률 학사학위 관련학과는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 계통의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[별지 제9호])</li> </ul> </li> </ul>
	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소,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인공지능(AI) 관련분야 경력

- 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  - \*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제5항

## 4 보수수준

#### 가. 연 봉

O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고
일반임기제 6급(상당)	83,677천원	55,756천원	

-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- ※「고용보험법」제10조 제1항 제3호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 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나. 기타수당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## 5 시험방법

#### 가. 1차시험: 서류전형

- O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  - ※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
### 나. 2차시험: 면접시험

- O 대 상 자 :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O 면접내용 :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O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O 합격자 결정 : 불합격 기준\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
  - ※ 불합격기준: 면접위원 괴빈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
  - ※ 면접결과 공개 :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(직접방문 및 정보공개청구)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
## 6 시험일정

#### 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25. 10. 20.(월) ~ 10. 22.(수), 18:00까지 /3일간 \*점심시간 제외
- 접수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2층)
- O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☞ 등기 위편 앞에 유원채용팀으로 연택람
  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####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▶ 주소 : (우54968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2층)
- ▷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4219)
- 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**통상환증서**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×)
- 나. 1차시험(서류전형): '25. 10. 24.(금)
  - ☞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시행 공고문(일정 안내 등) : '25. 10. 27.(월) / 도 홈페이지
- 다. 2차시험(면접시험): '25. 10. 29.(수) 예정
- 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'25. 11. 3.(월) 예정 / 도 홈페이지(시험채용) 공고
  - ※ 응시인원, 서류심사 등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도 홈페이지 시험채용에 공고

## 7 응시자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별지서식 1호)
- ②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1부(별지서식 2호)
- ③ **응시원서 1부**(별지서식 3호)
  - 응시수수료 :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<u>7천원(6·7급)</u>
    - ※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(09:00~16:00) \*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    - ※ 접수 마감일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및 통상환증서(우편접수시)가 없는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   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④ 이력서 1부(별지서식 4호)
  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

- ⑤ **자기소개서 1부**(별지서식 5호)
- ⑥ **직무수행계획서 1부**(별도서식 없음)
  -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
- ⑦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  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-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-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\*공고일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  - 증명서에는 <u>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</u> 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    - 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 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\*업무분장 내부 결재 및 분장표 제출
  -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(별지서식 8호)
  - <u>시간제,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</u>한 경력증명 제출 ※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<u>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</u>
 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(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)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  -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  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  -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
  - ☞ 유의사항 :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- ⑨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(①, ② 모두 제출)
  - 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※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  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  - ②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 발급) 1부. ※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해당연도 모두 제출
  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가능
-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제6호)
- ① 주민등록초본 1부(남여 모두 제출 /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)

- ①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※ 응시원서 접수시 **원본지참** 제시
- ③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- ①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(별지서식 7호)
- (15) 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**(별지서식 8호)(해당자에 한함)
- (i) **동일계통학과 추천서**(피지컬AI분야 임용자격기준 1번 해당자에 한함 / 별지서식 9호)

## 8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,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책자, 자격증원본)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마. 모든 증명서는 원본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,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 기간 기재)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.
- 바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사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 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
- 아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소식 (시험채용-임기제/개방형직위 임용시험)란에 공고합니다.
- 자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시험관련 문의 : 총무과 공무원채용팀(☎ 063-280-4219)
  - 업무관련 문의

임용분야	직 급	담당부서	연 락 처	비고
피지컬AI	지방행정6급 (일반임기제)	전환산업과	<b>☎</b> 063-280-2187	

# 참고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
피지컬 AI	지방행정6급(일반임기제)	1명	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
전북특별자치도	전환산업과	

○ 피지컬 AI 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 ○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 추진 ○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○ KISTEP 적정성 평가 대응 논리 마련 ○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○ 피지컬 AI 업무보고, 현안업무, 국회, 의회 대응	
--	--

핔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식윤리, 공식의식, 고객지향 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추진력, 관계 구축력 ○ (직렬별 역량) AI산업 전문지식 보유·활용, AI산업 관련 정책기획 능력, 창의성 및 대내외 소통능력 등
	이미이 못 내내지 그랑이다 이

	○ 국내외 피지컬 AI 산업 현황 및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전북특별
	자치도 피지컬 AI 산업 육성이 가능한 창의성과 추진력 보유
피어지시	○ 피지컬 AI 분야 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용능력, 소통
필요지식	및 운영 능력 ○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피지컬 AI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획·대응 능력
	○ 피지컬 AI 산업 및 미래모빌리티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이 가능한
	관련분야 전문지식·경험 보유

	관련분야 : 피지컬 AI
응시자격요건	<ul> <li>▶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li> <li>○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○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○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※ 관련학과</li> </ul>
	- 인공지능학과, 데이터사이언스학과, AI융합학과, 스마트모빌리티, 로봇학과, IT융합학과, 전자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컴퓨터과학과, 소프트웨어공학과, 통계학과 등 관련 학위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인공지능(AI) 분야 근무경력
우대요건	○ 없음